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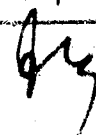



시민감사관운영규정 발령

- 발령대상 : 훈령 - 1건 (제정)
- 발령일 : 1997. 4. 25(금)
- 주관부서 : 감사담당관
-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감사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우리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의 목적, 설치, 구성 및 자격, 임무, 품위유지, 시민감사관 사무지원, 시민감사관 수행업무의 표시, 영장 등에 대하여 규정함.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문서번호 법무11010-99
 시행일자 1997. 4. 24 ()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기획관리실장	전철	/
법무 담당관		
법 제 계 장		
기안	김철수 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25(금).

첨부 훈령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훈령제 857 호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훈령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25(금)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7호. 끝.

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감사담당관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1997. 4. 25(금)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57호(생략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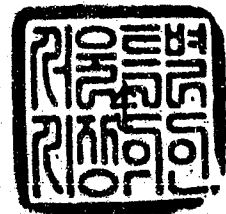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7년 4월 25일

서울특별시 장 조

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안

1. 제정이유

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감사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각종 행정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을 설치함(안 제2조).

나. 시민감사관은 감사원·검찰·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3명 이내로 구성함(안 제3조).

다. 시민감사청구사항·다중관련진정민원 등에서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시민감사관의 임무를 정함(안 제4조).

라.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감사에 대하여는 그 감사문서에 참여하였음을 표기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도를 제고 함(안 제7조).

3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규 :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
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

나. 합 의 : 예산총괄담당관, 시정개발담당관과 합의 되었음.

다. 예산조치 : '97 기정예산 기관운영인건비에서 집행

라. 기 타 :

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감사행정에 시민감사관을 직접 참여시켜 감사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실에 설치하는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각종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공익 또는 시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감사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둔다.
②시민감사관의 설치방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시민감사관은 3명이내의 전문직으로 구성한다.
②시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시민중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하고 인품과 역량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

1. 감사원에서 10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2. 검찰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
4.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3년이상 감사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- ③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희망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종에서 감사실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계획, 감사실시, 결과보고 및 조치 등 제반 감사활동에 참여한다.

1. 시민의 관심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
2. 시민감사청구사항
3. 진정민원중 공익 또는 다수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
4.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품위유지) 시민감사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민감사관 사무지원) 시민감사관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은 업무량에 따라 감사실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업무수행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민감사관 수행업무의 표시)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업무는 그 문서의 표지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여비등)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안
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91 / 전송 731-6885
 처리부서 : 감사담당관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재경

문서번호 감사 16071-584

시행일자 '97. 4. 14.

(정유)

수신 기획관리실장

참조 법무담당관

선결	1997. 4. 15		지	
접	일자	1997. 4. 15	시	
수	번호	856	결	법제계장 김재경
	처리과		재	
	담당자		공	
			탐	

제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안 조치의뢰

1.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따르실입과 같이 제정코자 하오니 조치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안 1부. 끝.

감 감사실장 김재경